

다니엘청년부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 다니엘청년부(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이하 본 교회) 교육부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 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및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적극 힘쓰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며 신앙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강령)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강령을 둔다.

하나. 예수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는 모든 젊은이들을 예수제자 삼고 세상을 변혁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의 신앙원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하나님중심
- ② 성경중심
- ③ 교회중심

제2장 예 배

제5조(예배)

- ①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린다.
- ② 세대통합 / 연합예배 등의 형태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 정회원은 전년도 총회 이후 **새가족 수료 후 예배에 3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 정회원은 **[소그룹 모임 참석]** 회칙 준수, 집회 출석, 회비 납부 및 기타 본회의 결의 사항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총회참석 및 표결권
- ② 정기 및 임시총회 발언권
- ③ 회장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④ 본회가 주재하는 집회의 참석권

apple	2024/12/05 22:52
개정안 01 - 설명 : 본회라는 말이 자주 나와서 반복되는 단어에 대한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함	

apple	2024/12/05 22:56
개정안 02 - 설명 : 정회원의 기준 완화	
apple	2024/12/05 22:28
개정안 03 - 설명 : 정회원 조건 변경에 따라 소그룹 모임의 중요도를 올리기 위함으로, 회원의 의무로 기재	
apple	2024/12/05 23:03
개정안 04 - 설명 : 정회원의 권리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 작성	

제4장 조 직

제9조(조직) 본회는 조직관리 및 활동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지도자그룹 : 지도장로, 지도목사, 전도사(**혹은** 전임 간사),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국

1. 회장: 1명 (2청)
2. 부회장: 1명 (1청)
3. 총무: 2명 (1.2청)
4. 서기: 2명 (1.2청)
5. 회계: 2명 (1.2청)

③ **사역국** : 사역국은 사역의 특수성과 부서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각팀은 팀장이하 팀원을 둘 수 있다.

1. 찬양팀장: 1명
2. 전도팀장: 1명
3. 미디어팀장: 1명
4. 새가족팀장: 1명
5. 증보기도팀장: 1명
6. 양육훈련팀장: 1명

④ 양육국 : **[전도사(혹은 전임 간사)]**, 리더

⑤ 임명

1. 지도자그룹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2.]회장단을 제외한 임·역원은 세례교인으로서 2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자여야하며 지도목사의 자문을 받아 신임 회장단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단, **2년 미만 본회에 출석한 자는 지도자그룹 추천에 의하여 가능하다.**

3. 사역국 팀장은 세례교인으로 1년 이상 본회 출석한 자로 지도목사 재량 또는 지도목사의 자문을 받아 팀 내에서 임명할 수 있다.

4. **양육리더**는 세례교인으로서 1년 이상 본회에서 출석한 자여야 하며 신앙의 본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합당한 자로서 지도목사의 재량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각 부서 연중 계획 및 예산안 보고받고 **[결재]**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 : 본회 행사 및 각 부서의 제반업무를 유기적 총괄 및 지원한다.

④ 서기 : 본회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 교적부 및 출석상황을 관리한다.

⑤ 회계 : 본회 금전출납에 관한 재정을 담당하며, 각 팀 및 소그룹에 회계를 둘 수 있다.

제11조(**사역국의 임무**) 본회의 사역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찬양팀** : 찬양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찬양팀은 예배에서 찬양 인도, 찬양대 등을 담당하며, 예배의 음악적 부분을 준비하고 이끈다.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되며, 팀장의 재량으로 임시보직 신설이 가능하다.

② **전도팀** : 국내외 선교 지원, 선교 기도, 전도 및 선교 활동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전도팀은 지역사회의 전도 활동 및 해외 선교지와의 연계를 지원하며, 선교 기도회 및 전도 프로그램

apple	2024/12/05 23:12
개정안 05 - 설명 : 및이라는 용어는 and를 뜻하는 용어로 상황에 맞게 or로 용어 변경	

apple	2024/12/02 22:26
개정안 06 - 설명 : 예배팀장 -> 찬양팀장으로 변경, 부팀장 삭제(12월 01일 의견 수렴)	

apple	2024/12/05 23:27
개정안 07 - 설명 : 엘더라는 호칭은 양육리더와 중복된 의미로 뒤에 구술되어 있어 중복성을 피함으로 삭제. 또한, 양육리더의 역할보다 상위 개념의 전도사님 직분으로 대체. 회칙에 간사로 단독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없기에, 전임 간사로 구체화	

ASUS	2024/12/07 05:43
개정안 08 - 설명 : 본회에서 -> 본회에 변경. 이전에는 지도목사의 자문에 따라 2년 이상이던지 2년미만이던지 누구든지 임역원으로 뽑을 수 있기에, 2년 미만인 자들은 지도자그룹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는 조건을 추가	

apple	2024/12/05 23:36
개정안 9 - 설명 : 엘더와 양육리더 일원화	

apple	2024/12/05 23:37
개정안 10 - 설명 : 이탈자 수정	

apple	2024/12/05 23:37
개정안 11 - 설명 : 회장 -> 부회장, 이탈자 수정	

ASUS	2024/12/07 05:44
개정안 12 - 설명 : 예배팀 -> 찬양팀으로 변경, 인원과 규모에 따라 변경함. 부팀장에 관한 내용도 삭제. 단, 임시보직 신설로 팀장 역할 분담 가능.	

- 을 기획하고 주도한다.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되며, 팀장의 재량으로 임시보직 신설이 가능하다. 팀장의 부재 시 당해연도 총무가 대행한다.
- ③ 미디어팀 : 본회의 예배 영상 관련, 이미지 디자인 등의 사역을 담당한다. 미디어팀은 예배 중 비주요 요소 관리(스크린, 영상, 사진 등)와 교회의 각종 활동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맡는다.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되며, 팀장의 재량으로 임시보직 신설이 가능하다.
- ④ 새가족팀 : 본회에 처음 등록한 새가족의 환영 및 양육의 역할을 담당한다. 새가족팀은 새로 등록한 청년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성장을 돕는다.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되며, 팀장의 재량으로 임시보직 신설이 가능하다.
- ⑤ 중보기도팀 : 본회의 회원과 예배 등 본 회와 관련한 사역들을 위한 기도회를 주관하는 일을 담당한다. 중보기도팀은 각종 기도회를 기획하고, 청년부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도한다.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되며, 팀장의 재량으로 임시보직 신설이 가능하다.
- ⑥ 양육훈련팀 : 청년부의 교육 및 훈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양육훈련팀은 청년부 회원들에게 신앙 교육 및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한다.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되며, 지도자그룹의 재량에 따라 1청, 2청 각 1명의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의 부재 시 지도자그룹 또는 리더가 대행한다.

제12조(양육국의 임무) 본회의 양육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전도사(혹은 전임 간사)] : 지도목사의 지도 아래 새가족 사역과 양육리더를 지원하며 소그룹 및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 ② 양육리더 : 지도목사의 지도 아래 소그룹모임을 인도하며 새가족을 섬기며, 회원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섬긴다.

제13조(임.역원. 사역국의 임기)

- ① 행정국의 임기는 당해연도 정기총회 폐회부터 명년 정기총회 개최까지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 ② 본회 사역국 팀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임이 가능하다.

제13-1조(인수인계)

- ① 인수인계는 임무의 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해당연도 부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해당연도 부회장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5장 선 거

제14조(회장단 선거)

- ① 회장
1. 회장후보는 세례교인으로서 본회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2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자여야 한다.
2. 회장후보가 상기 1호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을 후보로 지도자그룹의 만장일치하에 선출될 수 있다.]
3. 회장후보는 공천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한다.
4. 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로서 정기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5. 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단일 후보 시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부결 처리 후 재공천 한다. 복수 후보 시에는 2차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로 한다.
6. 재공천 시에는 회장단 선거 부결 후 1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를 통해 재선거 한다.

apple	2024/12/05 23:50
개정안 13	
- 설명 : 오타 표현 일원화	

apple	2024/12/05 23:53
개정안 14	
- 설명 : 이전에는 12월 1일부터 명년 11월 30일까지이므로, 2024년과 일치하지 않는 비문이 됨. 이를 막기 위해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apple	2024/12/05 23:56
개정안 15	
- 설명 : 이전에는 대리하는 자라고만 적혀 있어서 대리하는 자의 대한 정의가 없었기에, 부회장으로 구체화	

apple	2024/12/06 00:04
개정안 16	
- 설명 : 회장이라고 적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당선되기 전이므로, 회장후보로 변경.	

ASUS	2024/12/07 05:46
개정안 17	
- 설명 : 회장 후보 선출조건 의 예외상황을 작성	

user	2024/12/06 20:21
개정안 18	
- 설명 : 임회원이라는 정의가 어디에도 없었기에, 출석한 정회원으로 명확화	

② 부회장

1. 부회장후보는 세례교인으로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2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자여야 한다.
2. 부회장후보가 상기 1호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을 후보로 지도자그룹의 만장일치하에 선출될 수 있다.
3. 부회장은 공천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며, 제 14조 ①항 4호내지 제 6호를 준용한다.
- ③ [선거의 예외 및 후속처리]
1. 회장단의 결위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상기 ①항과 ②항에 준하여 회장과 부회장을 선정한다.
2. 선거의 결과는 현장에서 선포하고, 일주일 내에 후보 등 문서를 통해 공개한다.
3. '신 회장단'은 다음 해의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제15조(공천위원회)

- ① 구성
- 1.공천 위원회는 [지도자그룹의 자문을 받아 당해연도 임원단에서 전년도 회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전년도 회장 부재시 전년도 임원단 (부회장 > 총무 > 서기 > 회계) 중 1명이 대행한다.)]
2. 공천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장단이 [지도자그룹의 자문을 받아 임명한다.
3. 공천위원은 위원장과 당해연도 회장단이 [1년 이상 출석자로 각 청 (1청, 2청)을 균등 임명한다.]
4. 활동기간 : 정기총회 5주 전에 전 회원에게 통보하고 활동한다.
5. 공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위원은 즉시 위원 중에서 대리자를 선출하여 위원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공천위원장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2,3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공천위원회 내에서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6장 회 의

제16조(회의 종류) 본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와 기타 회의를 갖는다.

- ①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고 당해연도의 10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단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 소집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전 회원에게 통지하고 최대 4주 이내에 소집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및 회의방법)

- ① 제 16조 소정의 회의에 정족수는 최근 6개월 평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 ② 정기 및 임시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의 발의 및 의결권자의 기준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④ 의결정족수 미달 시 회의는 해산하며, 필요시 회장단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18조(의결사항)

- ① 정기총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2. 회장단 개편

ASUS	2024/12/07 05:46
개정안 19	
- 설명 : 부회장이라고 적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당선되기 전이므로, 부회장후보로 변경. 또한, 부회장 후보 선출조건 의 예외상황을 작성	
- 부회장도 회장과 동일하게 적용	

ASUS	2024/12/07 05:48
개정안 20	
- 설명 : 제 14조 3항 1호 문단은 회장단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므로, 임원단에 대한 내용 삭제	
- 제 14조 3항 2호내지 3호는 선거의 후속처리에 대한 내용 추가 명시	

apple	2024/12/06 00:41
개정안 21	
- 설명 : 지도위원에서 지도자그룹으로 변경, 사유는 자문위원을 여러명 두기 위함. 그리고 전년도라는 말이 빠져있어 비문을 방지, 회장 부재로 인한 대리순서 명시.	

apple	2024/12/06 00:47
개정안 22	
- 설명 : 지도위원에서 지도자그룹으로 변경. 자문위원을 여러명 두기 위함	

apple	2024/12/06 00:47
개정안 23	
- 설명 : 2년에서 1년이상으로 변경, 공천위원회 자격 완화 및 1청 2청 균등 임명을 통한 공천위원 당위성 확보	

apple	2024/12/06 00:39
개정안 24	
- 설명 : 총회 소집 이후 예외상황 구체화	

user	2024/12/06 19:44
개정안 25	
- 설명 : 회의 정의 명확화	

apple	2024/12/02 20:28
개정안 26	
- 설명 : 임회원이라는 정의가 어디에도 없었기에, 출석한 정회원으로 명확화	

- 3. 회칙개정 및 수정
- 4. 기타 안건
 - 가. 임시총회에는 전항에 준하여 통지한 사항만 의결한다.
 - 나. 기타 회의 시는 본회의 목적 수행상 필요한 안건 및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제7장 사 업

제19조(사업)

본회는 각 **항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회원 친교와 신앙향상을 위한 사업
- ② 교회와 분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각종 부대사업
- ③ 선교사업 및 구제사업

apple 2024/12/06 00:28
개정안 27
- 설명 : 조 다음 항, 호, 목 순입니다.
호로 적혀있던 것 상위 개념인 항으
로 변경

apple 2024/12/02 19:50
개정안 30
- 설명 : 회칙개정위원회에 대한 정의
명시

제27조(회칙개정위원회) [필요한 경우 지도자그룹의 자문을 받거나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회칙개정 위원회란, 교회의 회칙 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준비하여, 청년부 회칙의 규정과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경우, 지도자그룹 및 주요 직책을 맡은 정회원들로 구성된다.
② 회칙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한다.

제28조(공청회) 회칙개정 위원회는 임시총회나 정기총회 2주전에 공청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

user 2024/12/06 19:54
개정안 31
- 설명 : 임회원이라는 정의가 어디에도 없었기에, 출석한 정회원으로 명확화

제29조(의결) 개정된 발의안을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한 정회원**의 가부를 물어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본 교회 안에 둔다.

제2조(관례)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3조(효력) **본회 회칙은 당해연도 정기총회 폐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apple 2024/12/02 20:14
개정안 32
- 설명 : 당해연도 정기총회 폐회로 내용 변경

제8장 재 정

제22조(회비)

본회 재정은 회비와 당회보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회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청년회 회비
- ② 선교회비
- ③ 회비는 목적 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다

apple 2024/12/06 00:28
개정안 28
- 설명 : 조 다음 항, 호, 목 순입니다.
호로 적혀있던 것 상위 개념인 항으
로 변경

제23조(재정)

- ① 본회 모든 재정은 해당 금융기관에 ‘회’의 명칭 또는 ‘회장명’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예치한 통장은 회계가 관리하고, 지도장로, 지도목사와 회장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 ③ 본회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은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지도장로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결산보고) 재정의 총 결산보고는 12월 마지막 주에 하며 현 재정 상황은 다니엘청년부 월례회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제9장 회칙개정

제26조(발의)

- ① 본회 회칙개정은 회장단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한다.
- ② 발의 안은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게시된 발의 안은 정기총회 당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하며, 게시 시 전 회원들에게 이를 주보 및 광고를 통해 고지한다.

apple 2024/12/06 00:26
개정안 29
- 설명 : 발의 안 고지 및 게시에 대한 의무 작성

회 칙 약 사

1.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8조 2항 총무 : ‘2명’ 이상을 ‘1명’ 이상으로 개정)

2. 2013. 11. 회칙신설 (제3장 제8조 6항 마. 다만,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자도 목사님 추천에 의하여 가능하다.)

3.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10조 1항. 부속 팀에 속한 팀이름 ‘찬양팀, 중보기도팀’ 추가)

4.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10조 2항. ‘선교부장이’ 추가, ‘사역 팀으로 구성한다’를 ‘사역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개정)

5.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11조 ‘팀장’을 ‘팀장 및 간사’로 개정)

6. 2013. 11. 회칙개정 (제3장 제12조 ‘팀장, 리더의 임기’를 ‘임역원, 팀장, 리더의 임기’로 개정)

7. 2013. 11. 회칙개정 (제7장 제21조 3항. ‘납입한다’를 ‘납입할 수 있다’로 개정)

8. 2013. 11. 회칙일부삭제 (제7장 제23조 밑 삭제)

9. 2014. 11. 회칙개정 (제2장 제5조 ‘1회 이상 출석한자로 한다.’를 ‘4회 이상 출석한자로 한다.’로 개정)

10.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9조 1)회장. 각 부서 연중 계획 및 예산안 보고받고 **검제**한다.

11. 2014. 11. 회칙개정 (제3장 제9조 3)총무. ‘유기적으로 총괄한다.’를 ‘유기적 총괄 및 지원한다.’로 개정)

12.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10조 1)예배찬양부장. 제반 업무라 함은 본회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외부 강사 및 전반적인 예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동원하는 업무를 뜻한다.)

13.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10조 4)문서부장. 각종 행사 사진 파일과 동영상 보관을 담당한다.)

14.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10조 5)교육부장. GBS, FBS, 새가족 등 셀 구성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15. 2014. 11. 회칙신설 (제3장 제10조 6)미디어부장. 각종 행사의 매체를 통한 촬영을 담당한다.)

16. 2014. 11. 회칙신설 (제4장 제14조 1)구성 가. 공천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단이 지도위원의 자문을 받아 임명한다.

나. 공천위원은 위원장과 당해 연도 회장단이 당해 정기 총회로 부터 2년 이상 출석자에 한해서 협의해서 임명한다.)

17. 2014. 11. 회칙신설 (제4장 제14조 3) 공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위원은 즉시 위원 중에서 대리자를 선출하여 위원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공천위원장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2.3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공천위원회 내에서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18. 2014. 11. 회칙신설 (제8장 제26조 1)구성 가. 회칙개정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단이 지도위원의 자문을 받아 임명한다.

나. 회칙개정위원은 위원장과 당해 연도 회장단이 당해 정기 총회로 부터 2년 이상 출석자에 한해서 협의해서 임명한다.)

19. 2015. 11. 회칙개정 (제2장 제5조 ‘셀 모임’을 ‘소그룹 모임’으로 개정, ‘팀’을 ‘부속팀 및 양육소그룹 모임’으로 개정)

20. 2015. 11. 회칙신설 (제3장 제8조 4) 가. 팀장은 각 부속팀 및 양육리더의 장을 의미한다.

나. 양육리더는 양육소그룹을 인도하는 자이다.)

21.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8조 6) 라. ‘리더’를 ‘팀장’으로 개정, ‘회장단이 협의하여 임명한다.’를 ‘자문을 받아 팀 내에서 결정한다.’로 개정)

22.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8조 6) 마. ‘팀장’을 ‘양육팀장’으로 개정, ‘리더’를 ‘양육리더’로 개정)

23.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9조 5) ‘각팀’을 ‘각 팀 및 소그룹’으로 개정)

24.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11조 ‘팀장 및 간사와 리더의 임무’를 ‘양육팀장 및 간사와 양육리더의 임무’로 개정)

25. 2015. 11. 회칙개정 (제3장 제12조 ‘그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한다.’로 개정)

26. 2015. 11. 회칙신설 (제3장 제12조 단, 지도목사와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27. 2015. 11. 회칙개정 (제5장 제15조 3) ‘4/4분기로 하되 마지막(→3/4) 분기회는 정기총회로 대체한다.’를 ‘4/4분기로 한다.’로 개정)

28. 2015. 11. 회칙신설 (제5장 제15조 3) 가. 1/4분기는 전년 12월을 포함한 3월까지로 하고, 4/4분기는 10월, 11월로 한다.)

29. 2017. 11. 회칙개정 (제1장 제1조 “청년사역위원회 내 ‘20세부터 26세 이하’는 ‘1청년회’, ‘27세 이상’은 ‘2청년회’라 칭한다” 로 개정)

30. 2017. 11. 회칙개정
(제3장 제8조 2) ‘임원

apple 2024/12/02 19:39
개정안 33
- 설명 : 이탈자 수정

1청년회 회장 : 1명, 2청년회 회장 : 1명
1청년회 부회장: : 1명, 2청년회 부회장 : 1명
1청년회 총무 : 1명 이상, 2청년회 총무 : 1명 이상
1청년회 서기 : 1명 이상, 2청년회 서기 : 1명 이상
1청년회 회계 : 1명 이상, 2청년회 회계 : 1명 이상' 로 개정)

31. 2017. 11. 회칙개정 (제4장 제13조 1) 가. '회장은 세례교인으로서 본회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2년 이상 본회에서 출석한자여야 한다.' 로 개정)

32. 2019. 11. 청년사역위원회 1청년부.2청년부 통합에 의한 회칙 **개정**

33. 2019. 11. 회칙개정 (제5장 제14조 2) 부회장 가. '부회장은 세례교인으로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2년 이상 본회에 출석한 자여야 한다.' 로 **개정**)

apple

2024/12/02 22:20

개정안 34

- 설명 : 오타자 수정

apple

2024/12/02 22:20

개정안 35

- 설명 : 오타자 수정